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9 선고 2017가단5140612 판결 [구상금 등 청구]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22 선고 2018나2762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9 선고 2017가단5140612 판결

전문

원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김형민

피고 1. A

2. B

3. C

소송대리인 D

변론종결 2018. 3. 12.

판결선고 2018. 4. 9.

주 문

1.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179,971원 및 그중 37,718,905원에 대하여 2017. 6. 27.부터 2017. 7. 26.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과 피고 C 사이에 2016. 7. 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C는 피고 A에게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6. 7. 5. 접수 제6685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대위변제

1) 원고는 피고 A과 사이에 2015. 12. 15.경 보증기간을 2015. 12. 15.~2016. 6. 14., 보증한도를 40,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약정이 2016. 6. 14. 보증기간을 2016. 6. 14.~2017. 6. 13., 보증한도를 38,4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으로 갱신되었으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피고 B은 피고 A이 위 보증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A은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서를 담보로 E은행으로부터 48,000,000원을 대출받았다.

3) 피고 A은 위 대출금 채무의 이자 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원고는 2017. 6. 27. E은행에 피고 A의 채무 37,718,905원을 대위변제하였고, 피고 A에 대한 대지급금 432,246원, 미수 위약금 28,820원이 발생하였으며, 2016. 2. 1.부터 원고가 정한 약정 손해금률은 연 10%이다.

나. 피고 A의 근저당권 설정

피고 A은 2016. 7. 4.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C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피고 C에게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6. 7. 5. 접수 제66850호로 채권최고액을 7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라. 피고 A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무렵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3352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다21245 판결 등).

앞서 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성립한 것은 원고가 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2017. 6. 27.이고 이때는 피고 A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이후이지만, 이미 그 전에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구상금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와 같이 구상금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모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이때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335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A와 피고 C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피고 C의 사해 의사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C는, 피고 C와 피고 A, B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었고 위 조정에 따라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피고 C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데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6. 5. 30. '피고 A, B이 피고 C에게 2016. 6. 10.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한다. 피고 A, B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70,327,861원을 23회로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서울북부지방법원 2015머11705)이 성립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 A와 피고 C 사이에 위 조정과 별도로 이루어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당시 피고 C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179,971원(= 대위변제금 37,718,905원 + 대지급금 432,246원 + 미수 위약금 28,820원) 및 그중 37,718,905원에 대하여 2017. 6.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7. 26.까지는 약정 손해금률인 연 1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A과 피고 C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 C는 피고 A에게 그 원상회복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병직

별지